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91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박용갑·장철민·박정현

복기왕 · 조승래 · 조인철

황정아 · 정준호 · 한민수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적 실익이 있으며, 대부분 내용은 큰 실 익이 없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 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제약이 많아,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

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이전을 완료한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방안(이하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 2. 수도권 잔류기관(이전완료공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아니한 조직을 말한다)의 업무,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완료공공기 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중에서 지방이전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에 관하여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변경하 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 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 |
| | 방안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
| | 이전을 완료한 이전완료공공기 |
| | 관의 장은 이전 완료 이후 다음 |
| |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후 |
| | 관리방안(이하 "이전완료공공 |
| | 기관 사후관리방안"이라 한다) |
|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1.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
| |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
| | 2. 수도권 잔류기관(이전완료공 |
| | 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 |
| | 에서 이전하지 아니한 조직을 |
| | 말한다)의 업무, 위치, 인원, |
| |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 |
| | <u>항</u> |
| | 3.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의 |
| |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 | <u>정하는 사항</u> |
| | 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제 |
| |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완료공 |
| | 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 또 |
| | 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관 행 |
| | 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

한다.

③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정이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중에서 지방이전의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과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⑤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